

◎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-20호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9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
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범위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서류보관 부담을 완화 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(참조 :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, 전화 (044)215-4472, 팩스 (044)215-8079, 이메일 [simpjs@korea.kr](mailto:simpjs@korea.kr)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 
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 
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
- 전자우편 : simpjs@korea.kr
- 팩스 : 044-215-8079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
(전화 044-215-4472, 팩스 044-215-80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